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98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98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1414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0가합13146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F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나14144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A, C, D, E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A 등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과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G에 인정되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는 피고가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당초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당사자인 원고들 및 G과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피고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매도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철거의무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A 등의 이 사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신의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B, C이 H에게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위반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와 I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상계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채증법 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I로부터 I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를 양수하여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2012. 3. 20. 이후에는 I에 대하여 더 이상 차임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와 I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이와 같은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기록을 살펴봐도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0. 9. 3.부터 2010. 10. 19.까지는 이 사건 토지 중 3,584.8㎡만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2010. 10. 20.부터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